

May 28, 2021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 V. Events

Key Contacts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기업의 회계제도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교육 프로그램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 제목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1.5.6)

- **(점검결과)**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28건(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 중 13건(회사5, 대표자1, 감사인7)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회사)** 위반회사(19 사) 대부분(18 사)이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의무 불이행: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이 11 사이며,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13 사에 달함
 - **(대표자/감사)** ① 대표자는 관련 법규 숙지 미흡으로, ② 감사는 운영실태평가보고 과정 문서화 및 이사회 대면보고 의무 미숙지 등으로 위반
 - **(감사인)** 회계법인(7 사)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위반
-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가 전년대비 감소(36사→19사, 47.2%↓)한 바, 동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유의사항)**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운영·검증 절차 등이 강화된 바, 회사·감사인 관련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

- ① 회사는 CEO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의해야 하고,
- ②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반드시 표명하여야 함

KPMG Comment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도의 변화 내용을 숙지하여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을 최소화할 필요
 - 외부감사법, 모범규준 등에서 정한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부서, 감사(위원), 외부감사인별 요구되는 역할 및 책임을 인지
 - 연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설계, 운영, 평가, 보고 일정에 미리 대비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2021.4.12)

- 재무제표 심사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 방안이 순차적으로 도입·시행 중
 - 새로운 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시장에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보완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충실히 운영
- 회계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하여 한계기업, 취약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

• **중점 추진사항**

경기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강화	①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 강화 ② 회계부정에 대한 포착기능 제고 ③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①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처리원칙을 통한 효율성 제고 ②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 심사·감리 추진 ③ 시의성 있는 테마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 제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실시	① 감리주기 단축을 통한 회계법인 감독 강화 ② 리스크 중심의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 실시 ③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 안착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내실화	① 감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감리 프로세스 개선 ② 디지털 감리기법 활용 등으로 감리 선진화 추구 ③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

KPMG Comment

- 기업들은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에 힘써야 함
 - CFO 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PA* 등 전문성 보완방안 및 승계계획도 마련
 - 특정 주기 마다 또는 신규 회계기준 공표 후 특정기간 내 반드시 회계처리규정, 회계매뉴얼, 관련 내부통제 등 업데이트 및 이에 대한 정기 검토

- 경영진 검토통제(MRC**)를 누가, 언제,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가정과 판단이 논리적인지, 예외사항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 과거 발견된 오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결산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및 결산책임자의 검토책임 강화

*Private Accountant: 회계법인이 기업 내부 회계업무를 자문하는 서비스

**Management Review Control: 중요한 회계추정, 가정 및 판단이 개입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통제 활동으로서 대부분 핵심감사사항과 관련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2.8)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제도를 '06년부터 운영 중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
 - 이에 따라, '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20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모두 72건('19년: 64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
 - 이 중 17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20.3 월)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18년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한 것은 포상금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32	22	19	44	93	64	72
전년대비 증가율		△31.3	△13.6	△131.6	111.4	△31.2	12.5

3. 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17~'20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20년 중 5건, 나머지 7건 현재 감리 진행 중)에 대해 조치를 완료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0년: 고의 4건, 과실 1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 '18~'20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3% 수준이나 '20년 중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 비율은 80%로 이를 크게 상회

4.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지급 현황

- 금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20년도 중 총 4억 840만원(12명, 1인당 평균 3,4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전년대비 2억 8,900만원 증가(242%↑)
- 포상금 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 후 신고자(9명)에게 '19~'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 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이 5,490만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만원)

구분	'08년~'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건수	6건	2건	2건	1건	2건	12건	25건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40,840	64,470
평균지급금액	835	1,370	1,805	330	5,970	3,403	2,579

5.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지속 확대
 - 예산 증액 현황('21년: '20년 대비 0.6억원↑, '20년: '19년 대비 3.6억원↑)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전에는 상장법인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 중
 - 상장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접수
-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20.5월)으로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 종전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월부터 익명신고를 허용
 - 단,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형사처벌 부과(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 금융당국은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내에 내부 변호사를 신고자 보호 전담인력으로 지정

KPMG Insight

- 부정조사협회(ACFE*)에 따르면, 기업의 부정 적발 사례 중 약 43%가 내부 임직원 신고(Tip)를 통해 밝혀짐**
 - 부정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손실은 매출의 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ACFE, "Report to the nations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2020
- 익명 신고 허용이나 신고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포상금의 규모 자체를 상향할 필요
 - 상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제도 도입 후 14년 간('06년 도입) 포상금 지급 총 건수가 25건, 지급된 포상금 총액이 약 6억 5천만원에 불과
 - 미국은 Whistleblower 제도 도입 후 7년 간 59건의 포상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포상금 총액이 3.3억 달러(한화 약 3,800억원)에 달함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 제목 및 이미지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분석



- 2020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비적정 사유는 '범위 제한',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자금 통제 미비'의 순서로 집계되었음
- 미국과 비교 시 감사 첫 해 및 두 번째 해에 비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 대상 기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이는 감사제도 도입 초기를 감안한 계도 차원의 감독기조로 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감사의견 변형 비중이 낮게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음
- 향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함

[출처] 삼성KPMG K SOX 전문조직

SOX Compliance Amid a New Business Equilibrium



- SOX 준수와 관련해 조직 내부 비용 및 외부감사 비용 모두 여전히 증가 추세
- 비용과 마찬가지로 투입시간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절차 및 통제 자동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음

[출처] Protiviti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1.3.3)

Q

- 모회사 甲의 내부회계관리자 A가 자회사 乙의 내부회계관리자로 겸직 가능한가?

A

-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 이 때 외부감사법에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겸직 제한 조건 등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A가 모회사 甲과 자회사 乙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상근이사(집행임원 포함)이어야 함
 - 추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적합한지 확인 필요

관련 법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사업연도 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1.3.15)

Q

- 당사는, 2019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서 2020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처음 받음
- 2021년 중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을 확실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2년에 적용되는 것인지?

A

-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와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
- 질의한 대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0년부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2년부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 맞음

관련 법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인수된 사업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제외 가능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1.2.5)

Q

- 비상장 대기업인 丙이 2020년 중 비상장 중소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아님) 丁을 합병하였는데, 피합병법인 丁을 제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피합병법인 丁이 재무상 중요한 수준이기에 舊모범규준에 따르면 제외가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임
 - 반면, 新모범규준은 1년 이내에 인수된 사업부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상장 대기업인 丙은 舊모범규준의 적용을 받기에 新모범규준의 개정사항의 일부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A

- 舊모범규준 적용 회사는 경영진의 평가일 또는 그 전에 인수된 사업단위나 평가일 현재 사업폐지 부문(매각, 중단사업 등)으로 반영된 사업단위는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그 변동이 사업연도말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관련 법규

舊모범규준 적용해설서 3.5.2. 평가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사업단위의 정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부문 또는 영업시설(예: 사업부, 생산설비, 판매조직) 등이 사업단위에 해당한다. 특정 단위조직의 사업목적, 업무프로세스, 전산환경 등이 타 조직과 독립적인 경우 별도의 사업단위로 본다. (중략, 아래 각 범주에 대한 설명도 생략)

- (1) 범주 1: 재무적으로 유의한 사업단위
- (2) 범주 2: 특정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단위
- (3) 범주 3: 다른 사업단위와 결합되었을 때 재무적으로 유의한 사업단위
- (4) 범주 4: 중요하지 않은 사업단위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국내 동향

- **삼성 KPMG, 중견·중소 상장사 대상 'K-SOX 웨비나' [매일경제, 2021.3.23]**
 - 삼성 KPMG가 축적한 노하우와 다수의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중견·중소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
- **CEO '내부통제의무' 어디까지? 징계 논리 분석 나선 증권사들 [서울경제, 2021.4.14]**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CEO에 대한 잇단 제재에,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는 연구용역 발주 검토 중

- **거래소, 코넥스 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제공 [연합뉴스, 2021.5.12]**
 - 한국거래소는 회계전문가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일주일간 파견해 내부회계 미비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지는 15개사 제재 면제 [연합뉴스, 2021.3.24]**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6개사 중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0개 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힘
- **굿센, 중소·중견 상장 기업 전용 내부회계관리 구축·운영 지원한다 [전자신문, 2021.3.29]**
 -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중견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외부감사인의 요구사항 증대 60%, 전담부서(전문인력) 운영 부담 52%, IT 통제 시스템 운영·관리 부담 41% 순으로 응답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결과의 손쉬운 적용과 통제관리의 편의성, 운영평가 지원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최근 선보임

해외 동향

- **SOX or no SOX? The focus on internal control is here to stay [CITYA.M, 2021.5.7]**
 - 영국 정부는 미국의 재무보고 내부통제 감사(US SOX)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예정
 - 사실 US SOX 에 준하는 캐나다의 제도(CSOX)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CSOX 는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특히 강조함
- **Federal Court Decision Emphasizes Importance of Following Whistleblower Procedures [THE NATIONAL LAW REVIEW, 2021.4.15]**
 -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2002)과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은 모두 내부신고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방법원은 비록 두 법 간 공통되는 부문도 있으나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때 취해야 할 절차와 관련해 양법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함
 - 예컨대, 내부신고자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OSHA*에 이를 제보할 수 있고, 도드-프랭크법에 따르면 회사의 보복 행위가 발생한 후 6년 내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Back to top](#)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삼정 KPMG 아카데미 론칭 (내부회계관리제도 On-line 교육)



• **삼성 KPMG 아카데미 주요 콘텐츠**

구분	내용
정규교육과정	·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커리큘럼 - 감사위원회 교육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이슈브리핑	·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사이트와 KPMG 산업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Global Business의 주요 트렌드와 분석 보고서를 제공
세미나 다시보기	· 기 실시된 웨비나를 다시 볼 수 있게 구현

• **삼성 KPMG 아카데미 접속 방법**

구분	내용		
URL	https://kpmgacademy.hunet.co.kr/Home		
QR CODE(PC)		QR CODE(MOBILE)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성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신장훈 부대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Leader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Leader



김유경 전무

신장훈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위승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변영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조원덕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허세봉 부대표	품질관리 담당
염승훈 부대표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최재범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권영민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일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황재남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유경 전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김시우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조정래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지동현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윤주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최재혁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연정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봉한 상무	Infrastructure, 정부, 헬스케어 부문 담당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Privacy](#) | [Legal](#)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